행정기획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12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그간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근거 법령 및 사무명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위임 규정 삭제

나.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신설

-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신고·검사 및 보고 등 대한 사무

다.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 신설

라.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비 및 위임사무 삭제

마.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3조, 117조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3) 지방일괄이양법 제43조

-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제5항, 제6항, 제33조, 제35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행정기관간”을 “행정기관 간”으로, “행정능률향상”을 “행정능률의 향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허가·인가·등록등”을 “허가·인가·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를 “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임사무(제4조와 관련)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보건소장
가. 7급 이하(6급 무보직 평주사 포함) 지방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	
2.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나. 필수예방접종 · 임시예방접종	◦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다.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 같은 법 제27조	
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3.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임산부의 신고 등	◦「모자보건법」 제8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다.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라.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4.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33조제3항	
나.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휴·폐업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40조	
라. 의료기관 감독 (보고, 업무감사 등)	◦ 같은 법 제61조	
마.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폐쇄명령 등과 이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8조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5.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의원급)에 관한 개설신고	◦「의료법」 제35조제1항	보건소장
6.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접골·침구 시술소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제3항	
나. 변경신고	◦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휴업·폐업 신고	◦ 같은 법 제40조	
라.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7.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1조의 2	
나.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의 징구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 개설등록의 취소, 청문 등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마. 과태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33조	
8.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 재개업 신고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1조	
9.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설치·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등의 신고	◦「의료법」 제37조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나. 지도·감독·시정명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0.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구급차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 같은 법 제50조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1조	
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 같은 법 제35조	
마.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신고	◦ 같은 법 제35조의2	
바. 구급차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 같은 법 제45조제2항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		보건소장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나. 청문	◦ 같은 법 제56조	
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7조, 제62조	
1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약국개설등록 및 약국등록사항 변경	◦「약사법」 제20조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21조의 2	
다. 약국 폐업·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	◦ 같은 법 제22조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 같은 법 제41조	
마.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바.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0조	
사.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아.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차. 약사감시원의 배치	◦ 같은 법 제78조	
카.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80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3.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나.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 같은 법 제17조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17조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마.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바. 사용중지 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사. 영업소폐쇄 및 업무정지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아. 과징금처분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차. 허가증 등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카.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 같은 법 제40조	
14.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동일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 제34조	보건소장
15.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나. 금연, 절주, 교육 홍보	◦ 같은 법 제8조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 같은 법 제10조	
라. 보건교육 실시 등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마. 국민영양개선사업	◦ 같은 법 제15조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4조	
사. 건강증진사업 등	◦ 같은 법 제19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6.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폐업	◦「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자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5조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라.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0조	
마.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바.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 같은 법 제80조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카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	◦ 같은 법 제89조	
17.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62조제7호	
1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약사법」 제44조의2	
나. 폐업·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4조의2	
다. 판매자의 지위승계	◦ 같은 법 제44조의5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마.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0조	
바.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사.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아.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자.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 같은 법 제80조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마약류감시원 배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 같은 법 제49조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2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	
나.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6조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마.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바. 사용중지 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사. 영업소폐쇄 및 업무정지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아. 과징금 처분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차. 신고증의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21. 특수의료장비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등록 및 변경	◦「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	
나. 서류의 작성, 비치, 보존, 제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다. 시정명령	◦ 의료법 제63조	
2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같은 법 제6조의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기관 간---------- 행정능률의 향상----------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 허가·인가·등록 등 ----------. ② ---------- 때----------.

[별표]

현 행			개 정 안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나. 구의회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다.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제27조 、 제30조의5 、 제60조 、 제63조 、 제6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 제26조 ○「지방자치법」제91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제26조	구의회 사무국장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제 나. 삭제 가. 7급 이하(6급 무보직 평주사 포함) 지방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제, 제6조, 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제26조	보건소장
2.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에 관한 사무	○ 「의료급여법」제8조제3항	동 장	2. 삭제		
3.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나. 정기예방접종 、 임시예방접종 다.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전염병예방법」제21조,동법시행 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 ○「전염병예방법」제11조 및제12조 ○「전염병예방법」제20조 ○「전염병예방법」제56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제3항	보건소장	3.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나. 필수예방접종 、 임시예방접종 다.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보건소장
4.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임산부의 신고 등 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다.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라.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모자보건법」제8조제2항 、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모자보건법」제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모자보건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보건소장	4.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임산부의 신고 등 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다.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라.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모자보건법」제8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2조,	보건소장

	○「모자보건법」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 제9조 ○「모자보건법」제2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5.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나. 변경신고 수리 다. 휴、폐업 신고의 수리 라. 의료기관 감독(보고, 업무감사 등) 마.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폐쇄명령 등과 이에 따른 청문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 의료보수에 관한 사무(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는 제외)	○「의료법」 제33조제3항 ○ 동법 제33조제5항 ○ 동법 제40조 ○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 ○「의료법」 제63조、제64조 ○「의료법」제67조、제68조 ○「의료법」제45조	보건소장	5.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나. 변경신고 수리 다. 휴、폐업 신고의 수리 라. 의료기관 감독 (보고, 업무감사 등) 마.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폐쇄명령 등과 이에 따른 청문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 삭제	○「의료법」 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8조 ○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보건소장
6.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의원급)에 관한 개설신고	○ 「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	보건소장	6.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의원급)에 관한 개설신고	○「의료법」제35조제1항	보건소장
7. 안마、접골、침구 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 제81조 및 제82조	보건소장	7.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접골·침구 시술소에 관한 사무 가. 개설신고 <신설> 나. 변경신고 <신설> 다. 휴업·폐업 신고 <신설> 라. 시정명령·업무정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신설>	○「의료법」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보건소장
8.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8.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다. 보고의 징구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개설등록의 취소, 청문 등 마. 과태료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15조 ○ 동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 동법 제33조		가. 개설등록 나.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 다. 보고의 징구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개설등록의 취소, 청문 등 마. 과태료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1조의2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 같은 법 제33조	
9.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나. 지도감독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7조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11조	보건소장	9.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 재개업 신고 나. 지도감독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7조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11조	보건소장
10. 치과기공시설의 인정·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등	보건소장	10. 삭제		
11.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치·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등의 신고 나. 지도·감독·시정명령	○「의료법」제37조제1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관한규칙」제3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보건소장	11.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치·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등의 신고 나. 지도·감독·시정명령	○「의료법」제37조제1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관한규칙」제3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보건소장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등의 운용에 따른지도감독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마.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4조 ○ 동법 제50조 ○ 동법 제31조 ○ 동법 제35조 ○ 동법 제35조의2	보건소장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등의 운용에 따른지도감독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마.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4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보건소장

기관의 응급의료 시설 신고 바. 구급차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 동법 제45조제2항		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신고 바. 구급차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 같은 법 제35조의2 ○ 같은 법 제45조제2항	
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5조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 의 행정처분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나. 청문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5조제2항 ○ 동법 제56조 ○ 동법 제57조	보건소장	13「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5조제3항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단, 폐쇄명령은 신고의경우에 한함) 나. 청문 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5조제3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제62조	보건소장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등록 나. 약국등록사항변경 다. 폐업·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개시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차. 약사감시원의 배치 카. 등록증등의 갱신 및 재교부 타. 과징금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 동법 제22조 ○ 동법 제41조 ○ 동법 제69조 ○ 동법 제70조 ○ 동법 제71조 ○ 동법 제74조 ○ 동법 제76조 및 제77조 ○ 동법 제78조 ○ 동법 제8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 ○ 동법 제81조 ○ 동법 제98조	보건소장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등록 및 약국등록사항 변경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다. 약국 폐업·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따르는 청문 차. 약사감시원의 임명 카.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20조 ○ 같은 법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장
15.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	○「의료기기법」제16	보건소장	15.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7	보건소장

고 나.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사용중지 명령 등 사. 영업소폐쇄 및 업무정지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과징금처분 및 징수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차. 신고증의 갱신 카. 신고증의 재교부 타.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 동법 제28조 ○ 동법 제30조 ○ 동법 제31조 ○ 동법 제32조, 제34조 ○ 동법 제33조 ○ 동법 제47조 ○ 동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동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 동법 제35조		나.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사용중지 명령 등 사. 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과징금처분 및 징수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차. 삭제 카. 허가증 등의 재발급 타.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같은 법 제40조	
16. 건강진단등의 신고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 제3항 、제4항	보건소장	16.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동일명칭 사용금지에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 제34조	보건소장
17.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금연, 절주, 교육 홍보 다.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라. 보건교육 실시 등 마. 국민영양개선사업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 건강증진사업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 동법 제8조 ○ 동법 제10조 ○ 동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동법 제15조 ○ 동법 제34조 및 제35조 ○ 동법 제19조	보건소장	17.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금연, 절주, 교육 홍보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라. 보건교육 실시 등 마. 국민영양개선사업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 건강증진사업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19조	보건소장
18. 기생충예방을 위한 수거 검사	○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제1항	보건소장	18. 삭제		
			19.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보건소

<신설>			사무<신설>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폐업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자 신고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카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	○「약사법」제45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 4,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89조	장
<신설>			20.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신설> 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약사법」제47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규칙」제62조제7호	보건소장
<신설>			2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신설>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 다. 판매자의 지위승계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바. 폐기명령 등 사. 개수명령 아.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자.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약사법」제44조의 2 ○ 같은 법 제44조의 2 ○ 같은 법 제44조의 5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 4,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의 3,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장
<신설>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신설> 가. 마약류감시원 배치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 같은 법 제49조	보건소장
<신설>			23.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신설>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폐기명령 등	○「의료기기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보건소장

			바. 사용중지 명령 등 사. 영업소폐쇄 및 업무정지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과징금 처분 및 징수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차. 신고증의 재교부	제39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신설>			24. 특수의료장비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신설> 가. 등록 및 변경 나. 서류의 작성, 비치, 보존, 제출 다. 시정명령	○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 의료법 제63조	보건소장
19.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동장	2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동장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2022.1.13.시행)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